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현 찬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와 시민들을 위해 동행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행정자치위원회 한 기 영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
- 본 조례는 「지방세법」을 상위법령으로 하는 위임 조례로 목적 사항에 같은 법 시행령을 추가 명시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.

- 「지방세기본법」의 위임 사항인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기준 및 교부방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「지방세기본법」 위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로 이관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 현 찬 위원장님과 서울시의 시세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